

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이유

-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신규 수립하고
- 신청사 건립부지 중 자금부족으로 매입하지 못한 잔여부지 추가 매입비와,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위한 용역비를 확보하기 위해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임.
-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선진 위생문화자료를 통하여 구민의 식품영양학적 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해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(백만원)

기 금 명	당 초	변 경	증·감
문화체육및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	0	68	증 68
청사건립기금	208	3,093	증 2,885
식품진흥기금	161	198	증 37

3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(제 11조)
- 사하구 문화체육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설치및 운용조례 (제 2조, 제 3조)
- 식품위생법(제 71조) 및 같은법 시행령(제 43조)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

4. 검토의견

가.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 기금운용 계획안은

2008. 5. 21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에 의거 관련기금 운용계획을 새로이 수립한 것으로 적법성 및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문화체육의 육성과 인적자원 개발 측면에서 볼때 본 사업은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.

나. 청사건립 기금 운용 계획안은

신청사 건립 예정 부지인 부산교통공사 소유토지 (16,700㎡ 중 12,830㎡)는 2007. 10. 18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3,870㎡는 자금 부족으로 매입하지 못하고 이번에 일반회계 전 입금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잔여 부지를 매입 하려는 것으로 현 청사가 노후·협소하여 신청사 건립이 시급한 점을 감안해 볼때 본 기금 변경 계획안은 원안 가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.

나.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은

식품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를 방지하고 식품업소 위생수준향상 및 부정·불량식품, 식중독 없는 안전한 식생활 환경조성과 건강증진을 위해 본 기금 변경 계획안은 원안 가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